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3 - 26호

2023년 제3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구분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담 당 업 무
	역학조사관 〈감염병관리지원단〉 <mark>[재공고]</mark>	일반임기제 의무5급	1명	1년	주40 시간	○ 법정감염병 감시 및 도 주관 역학 조사 시행○ 감염병 발생 통계 및 시군 담당자 대상 역학조사 기술지원 교육 등 수행○ 국가필수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일 반 임기제	IT 서비스 기획 및 관리요원 〈정보기획담당관〉 [재공고]	일반임기제 전산7급	1명	1년	주40 시간	 ○ 신규 IT 서비스과제 발굴/연계공모사업 추진 등 ○ 신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운영/관리 ○ 클라우드 저장소 및 웹오피스 운영 클라우드 프린팅/좌석예약시스템 운영 ○ 스마트워크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홍보/확산
시 간 선택제 임기제	행정심판 전문요원(집행정지) 〈행정심판담당관〉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주35 시간	 ○ 행정심판 청구사건 당사자 주장 및 처분 관련 사건 기록 정리 ○ 행정소송사건 소송 수행 및 관리 ○ 집행정지사건 검토 및 처리 ○ 국선대리인 신청사건 검토 및 처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 사건 관리 ○ 법률검토 및 자문
TY MI	행정심판 전문요원 〈행정심판담당관〉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주35 시간	○ 행정심판 청구사건 당사자 주장 및처분 관련 사건 기록 정리○ 현장조사 및 관련 법령판례 검토○ 위원회 안건 상정, 재결서 작성 및송달





구분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담 당 업 무
	국제교류 전문요원(영어) 〈국제경제협력과〉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주35 시간	 ○ 영어권 행사통역 및 국제의전 수행 ○ 도 발행 각종 서한, 홍보자료, 간행물 등 번역 ○ 영어권 정책동향 파악, 자료 수집 등 ○ 국제교류사업 추진
	노동인권 진흥요원 〈노동권익과〉 (의정부시 소재)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주35 시간	○ 노동법률교육 사업 운영 및 기본 계획 수립○ 노동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노동교육 관련 협의체 운영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보건관리 전문요원 〈노동안전과〉 (의정부시 소재)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주35 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2조에서 정한 업무 ○ 산재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순회점검 지도 등
	균형발전 전문요원 〈균형발전담당관〉 (의정부시 소재)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1년	주35 시간	 ○ 경기도 균형발전 5개년 (시행)계획 수립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경기도관설치 및 운영 ○ 지역혁산체계 운영 지원 및 워크숍포럼등행사 추진 ○ 균형발전 이슈 언론 동향파악 및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 현안 대응 ○ 균형발전 관련 정책연구 추진 및 관리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공고 사유

- 응시자 없음 : 역학조사관

- 선발인원과 응시인원 동일: IT 서비스 기획 및 관리요원, 행정심판 전문요원(집행정지), 행정심판 전문요원, 노동인권 진흥요원, 균형발전 전문요원

- 선발인원과 서류전형합격인원 동일 : 국제교류 전문요원(영어)

- 서류전형합격자 없음 : 보건관리 전문요원

※ 「2023년 제3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위 재공고 분야에 응시한 사람은 재응시 불필요





2. 법령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31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마.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제16조, 별표 6의3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 없음
- O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





나. 응시요건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임용분야 〈근무부서〉임용직급	자 격 기 준
역학조사관 〈감염병관리지원단〉 일반임기제 의무5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감염병, 역학, 의료서비스 관련 근무경력 ○ 추가 필수자격: 「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증 소지자
IT 서비스 기획 및 관리요원 〈정보기획담당관〉 일반임기제 전산7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ICT/스마트워크센터/클라우드시스템 운영관련 근무경력 ○ 추가 필수자격: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행정심판 전문요원(집행정지) 〈행정심판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법무, 행정소송, 행정심판 관련 근무경력
행정심판 전문요원 〈행정심판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법무, 행정소송, 행정심판 관련 근무경력
국제교류 전문요원(영어) 〈국제경제협력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국제교류관련 근무경력 ○ 추가 필수자격: TOEIC 920점, TEPS 800점(New-TEPS 452점), TOEFL-IBT 107점, OPIc IH, TOEIC Speaking 160점, TEPS Speaking 69점, IELTS 8.0 이상인 자 또는 통번역대학원(영어) 학위소지자 ※ 어학성적은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여야 함.





임용분야 〈근무부서〉임용직급	자 격 기 준
노동인권 진흥요원 〈노동권익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노동법률 교육·상담 관련 근무경력
보건관리 전문요원 〈노동안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산업보건, 보건관리 관련 근무경력 ○ 추가 필수자격: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균형발전 전문요원 〈균형발전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균형발전, 지역혁신, 지역활성화사업 관련 근무경력

-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하며, 근무기간 산정 시 시간할 계산됨.
- ※ 상위 계급(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임용등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별표6의3)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O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O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O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나. 2차 시험: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 추가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3. 20.(월) ~ 3. 22.(수) / 3일간

※ 응시수수료: 5급(호), 가급: 1만원 / 6·7급(호), 나·다급: 7천원 / 8·9급(호), 라·마급: 5천원

- 방문접수
 - 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응시수수료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가급적 빠른 등기우편으로 송부
 - 워서접수 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u>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u>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체국 우편통상환 구입은 16:30 까지 가능함
 - 우편봉투 겉면에 <u>'2023년 제3회 재공고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u> 표기

다.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처 : 구(舊)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 주소 : (우편번호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구 경기도청 인재채용동 2층 인재채용팀
-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가 아닌 '구 경기도청사(수원시 팔달구 소재)'임에 유의







6. 시험일정

구 분	기 간
원서 접수	2023. 3. 20.(월) ~ 3. 22.(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 4. 4.(화) 전·후
면접시험	2023. 4. 10.(월) ~ 4. 13.(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3. 4. 17.(월) 전·후
임용예정시기	2023. 5월 중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http://www.gg.go.kr 접속 → 뉴스 → 공무원 임용시험 → 임기제・개방형 직위 → 합격자 발표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보수수준

- O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 O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임용예정 분야	임용직급	상한액	하한액
역학조사관	일반임기제 의무5급	-	63,752천원
IT 서비스 기획 및 관리요원	일반임기제 전산7급	64,776천원	46,006천원
행정심판 전문요원(집행정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9,350천원	46,210천원
행정심판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9,350천원	46,210천원
국제교류 전문요원(영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9,350천원	46,210천원
노동인권 진흥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9,350천원	46,210천원
보건관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9,350천원	46,210천원
균형발전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56,679천원	40,256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 양면인쇄 금지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접수) 인재채용팀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원서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2.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서식 제5호)	해당 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기능)	필수
6. 서류전형 지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응시분이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항목 삭제)	필수
7. 동의서 각1부 (별지서식 제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전동의서 1부 (또는 초본 제출-병역사항 표기)	필수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이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필수
9.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10. 경력(재직) 증명서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시간체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지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시간체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4년간 주 20시간 시간체 근무시 2년 인정) ○ 재직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구	분	내 용	비고	
11. 기타 증빙서류		○ <mark>추가필수 자격의 경우 해당 서류 반드시 제출</mark> ○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연구논문 등의 경우 별지서식 제5호에 따라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 관련전공 증명서(추가필수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자 제출	
※ 주의시항	ㅇ 해외 발급 중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원서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O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까지의 우편 소인분에 한해 접수 가능함.



- O 원서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되도록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 예상됨.
- O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림.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O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기합격지를 결정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63, 4064, 4045)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아래 표 참조

임용예정 분야	직무관련 주무부서	연락처
역학조사관	감염병관리지원단	031-8008-5429
IT 서비스 기획 및 관리요원	정보기획담당관	031-8008-3883
행정심판 전문요원(집행정지)	행정심판담당관	031-8008-2837
행정심판 전문요원	행정심판담당관	031-8008-2163
국제교류 전문요원(영어)	국제경제협력과	031-8008-2765
노동인권 진흥요원	노동권익과	031-8030-4632
보건관리 전문요원	노동안전과	031-8030-4622
균형발전 전문요원	균형발전담당관	031-8030-2642